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1737
----------	------

2024년 4월 30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성흠제 의원 외 24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4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4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 조사의 항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해당 구역 교통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의 체계적인 지정·해제 및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을 자동차 통행량, 보행자 수와 통행로의 체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으로 구체화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안 제5조 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12. ~ 2024. 4. 16.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 제출의견: 원안가결

-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근거하여 예산편성하고 경찰청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 법 조항을 서울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

---

1)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 보행자전거과-5758(2024.4.18.))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와 방법, 실태조사 시행 시 위탁 기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sup>2)</sup>의 시행 주기와 방법, 실태조사의 위탁 기관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 현재 「도로교통법」 제12조<sup>3)</sup>에 따르면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2)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경찰청, 2024.01.)

- 교통약자의 교통사고의 예방을 통한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및 보호구역 시설 등의 현황 파악, 도면작성, 문제점 개선안 도출 등 일련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

3)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서울시는 '24년 3월 기준 1,894개소의 보호구역 중 200개소(약 10.5%)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고,

매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sup>4)</sup>’을 수립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형화 용역<sup>5)</sup>’을 통해 보호구역의 현장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

4) 2024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보행자전거과-2190호, 2024.2.8.)

- 추진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세부 추진계획

-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 ▶ 인지 향상을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 체계화
- ▶ 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 향후일정

- ▶ 2024. 2. ~ 5. : 경찰협의, 설계, 예산재배정 등
- ▶ 2024. 7. ~10. : 자치구별 사업 추진

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형화 용역(보행자전거과-2190호, 2023.3.21.)

- 용역명: 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형화 용역

- 용역기간 및 용역비: 2023. 5. ~ 12. / 353,000천원

- 주요내용: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형별 맞춤형 정비방안 마련

- ▶ 현장 실태조사: 기본사항(보호구역 범위 등), 도로, 보행조건, 횡단시설물, 도로부속물, 미흡사항 등
- ▶ 보호구역 유형별 분류 및 분류기준 마련
- ▶ 보호구역 유형별 맞춤형 정비 방안에 따른 기본설계

※ 서울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24.3.기준)

총 계	어린이보호구역 (1,694개소)				노인보호구역 (18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5개소)		
	초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특수 학교, 학원)	노인 여가 복지	노인 의료 복지	기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장애인 직업 재활
<b>1,894</b>	606	505	485	98	134	28	23	6	7	2

- 최근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가 개정되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환경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실태조사 업무를 교통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한 바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정책과 함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보호구역 관련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내 용	개정일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u>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u>한국도로교통공단법</u> 」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3.4.18. / 시행일 2024.7.31.>	2023. 4.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2023. 12.19.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	제11조의3(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 중 시장등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현황 4. 보호구역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 보호구역등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6. 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023. 12.29.

○ 다만, 동 조례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 제5조제1항6)의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6)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다는 점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여짐

- 이와 함께 각 자치구에서 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 및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시행 시점부터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보호구역 주변 도로 여건의 변경 사항, 교통안전 시설물의 강화가 필요한 지점과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고 추후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가. 수정이유

- 동 조례개정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수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시장은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37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30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조례개정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시장은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

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을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을 개정안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위원회안)
<p>제5조(실태조사) ① <u>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u>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5조(실태조사) ① <u>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5조(실태조사) ① <u>-----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개정안과 같음</u>)</p>

##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실태조사) ① <u>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u>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5조(실태조사) ① <u>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